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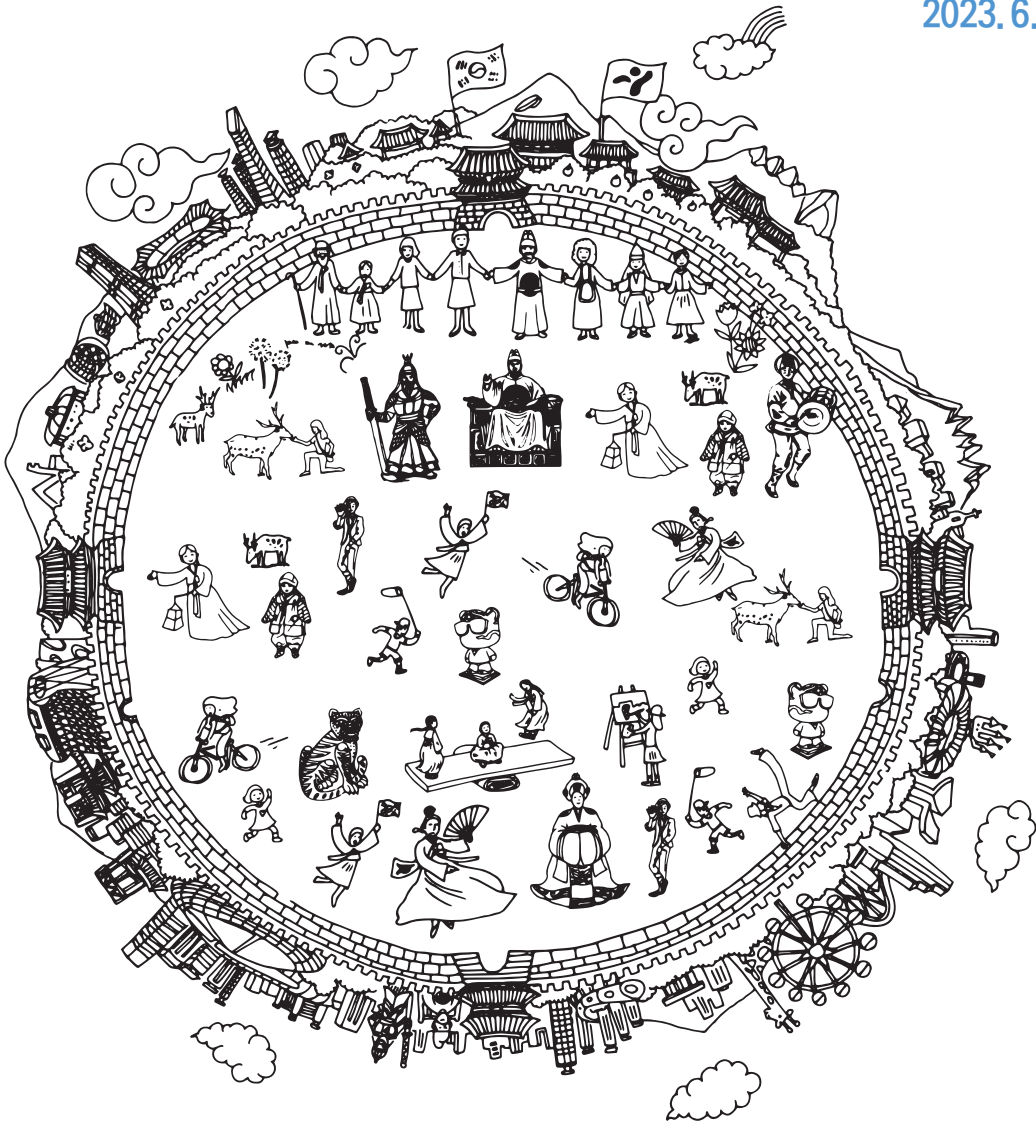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84호
2023. 6. 27.(화)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3 - 1897호 서울특별시 법령 등 불부합 규칙 일괄폐지규칙안 입법예고	2
--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897호

서울특별시 법령 등 불부합 규칙 일괄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법령 등 불부합 규칙 일괄폐지규칙」을 입법예고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상위규정 위임근거 삭제 또는 상위조례 폐지에 따라 폐지가 필요한 우리시 규칙을 폐지함으로써 우리시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 위임근거조항(소상공인법 시행령) 삭제(' 11.8월)

나. 「서울특별시공무원승진임용규정」 폐지

▶ 위임근거조항(지방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 개정으로 동 규칙의 근거 삭제(1971.4.14.)

다.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 상위조례 (「市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폐지(' 19.3월)

라.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 상위조례 (「市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 19.7월)

마.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 폐지

▶ 상위조례 (「市 시민 행복 증진조례」) 폐지(' 23.5월)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91, FAX:02-2133-0821, E-mail: nuri71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본관5층 법무담당관
- 2) 이메일: nuri717@seoul.go.kr
- 2)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폐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법령 등 불부합 규칙 일괄폐지규칙안

다음 각 호의 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서울특별시공무원승진임용규정
3.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